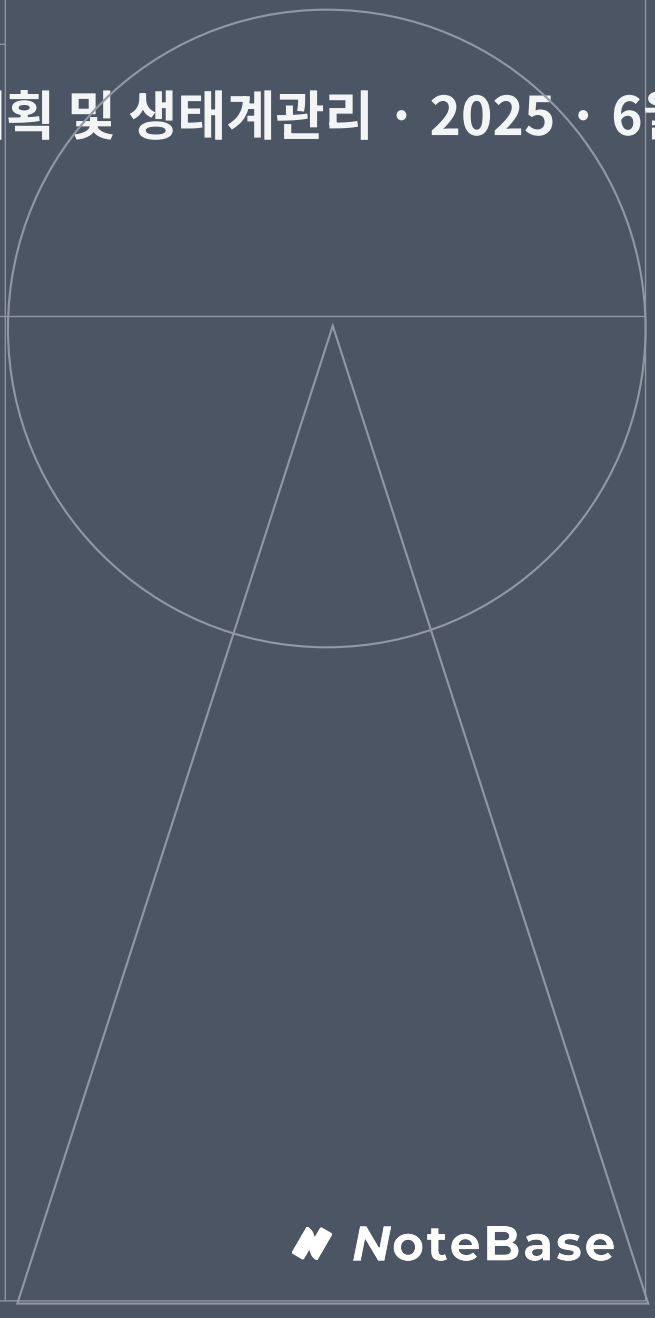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2025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2025 · 6월

공무원/서울시/9급 ·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2025 · 6월

문 1.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상 토지적성평가에 사용하는 평가지표 가운데 '필수지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경사도

② 표고

③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④ 보전산지비율

정답 4번

①

경사도는 **개발적성 평가의 필수지표**이다.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별표 1 제1호
평가지표군 및 평가지표
(2-3-1관련)
1. 평가지표군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8SFvfxIeqjqWSOc9VTukS7-sKVI_IXk2.webp

주 : 1) 거리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최단거리에 있는 시설 등을 기준으로 평가 한다.

NoteBase

②

표고는 **개발적성 평가의 필수지표**이다.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별표 1 제1호
평가지표군 및 평가지표
(2-3-1관련)
1. 평가지표군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8SFvfxIeqjqWSOc9VTukS7-sKVI_IXk2.webp

주 : 1) 거리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최단거리에 있는 시설 등을 기준으로 평가 한다.

③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는 **개발적성 평가의 필수지표**이다.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별표 1 제1호
평가지표군 및 평가지표
(2-3-1관련)
1. 평가지표군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8SFvfxIeqjqWSOc9VTukS7-sKVI_IXk2.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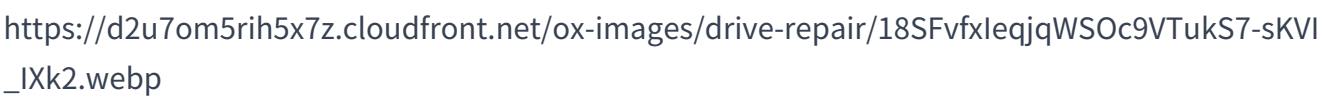
주 : 1) 거리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최단거리에 있는 시설 등을 기준으로 평가 한다.

NoteBase

④

보전산지비율은 **보전적성 평가의 선택지표**이다.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별표 1 제1호
평가지표군 및 평가지표
(2-3-1관련)
1. 평가지표군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8SFvfxIeqjqWSOc9VTukS7-sKVI_IXk2.webp

주 : 1) 거리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최단거리에 있는 시설 등을 기준으로 평가 한다.

NoteBase

문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① 경관녹지
② 완충녹지
③ 보전녹지지역
④ 생산녹지지역

정답 1번

공통 해설

경관녹지는 자연환경의 보전·개선과 훼손 지역의 복원·개선을 통해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녹지의 세분)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 ·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NoteBase

문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형질변경계획서
② 사업계획서
③ 공사시행계획서
④ 원상회복계획서

정답 1번

①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는 사업계획서, 공사시행계획서, 원상회복계획서이다.
토지형질변경계획서는 이 제출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②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시 **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NoteBase

③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시 **공사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2. 공사시행계획서

④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시 **원상회복계획서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3. 원상회복계획서

NoteBase

문 4. 「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 중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해일·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① 생활환경보호구역
② 경관보호구역
③ 수원함양보호구역
④ 재해방지보호구역

정답 4번

공통 해설

재해방지보호구역은 **토사 유출·낙석을 막고 해풍·해일·모래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이다.

산림보호법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 해일 · 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oteBase

문 5. 홀(Hall)의 개인적 공간 구분 중, 친한 친구 혹은 잘 아는 사람들 간의 일상적 대화에서 유지되는 개인적 거리 (personal distance)에 해당하는 것은?

① 0~1.5피트(0~45cm)

② 1.5~4피트(45cm~1.2m)

③ 4~12피트(1.2m~3.6m)

④ 12피트(3.6m) 이상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홀의 **개인적 거리**는 친한 친구나 잘 아는 사람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리로, **1.5~4피트(약 45cm~1.2m)**에 해당한다.

공통 해설

홀의 개인적 거리(personal distance)는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유지하는 개인적 공간으로, 친한 친구나 잘 아는 사람과 대화할 때의 거리이다. 상대의 표정과 얼굴을 분명하게 보면서 보통 크기의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간격이다.

개인적 거리의 가까운 단계는 1.5~2.5피트, 먼 단계는 2.5~4피트이므로, 두 단계를 합친 범위는 **1.5~4피트(약 45cm~1.2m)**이다. 따라서 문제의 일상적 대화에 해당하는 구간은 이 범위이며, 이보다 가까운 0~1.5피트나 더 먼 4~12피트 및 12피트 이상 구간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6. 「경관법」상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광역지자체장은 해당 관할 구역에 대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경관계획 수립에 상관없이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경관지구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경관협정은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 체결된다.

정답 3번

①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해야 하는 것은 **경관계획**이다.

경관법 제6조(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 · 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경관법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 ·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시 · 도지사

NoteBase

②

경관사업은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경관계획 수립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리다.

경관법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綠化)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적 · 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 · 도지사등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관지구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경관법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④

경관협정은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원의 합의**로 체결한다. 동의의 주체를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경관법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NoteBase

문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광장 ㄴ. 공원
ㄷ. 녹지 ㄹ. 유원지
ㅁ. 공공공지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ㅁ
④ ㄱ, ㄴ, ㄷ, ㄹ, ㅁ

정답 4번

ㄱ

광장은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로 분류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8.5.26, 2009.11.2, 2013.6.11, 2016.2.11, 2018.11.13, 2019.12.31>
2. 공간시설 : 광장 · 공원 · 녹지 · 유원지 · 공공공지

ㄴ

공원은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로 분류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8.5.26, 2009.11.2, 2013.6.11, 2016.2.11, 2018.11.13, 2019.12.31>
2. 공간시설 : 광장 · 공원 · 녹지 · 유원지 · 공공공지

NoteBase

ㄷ

녹지는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로 분류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8.5.26, 2009.11.2, 2013.6.11, 2016.2.11, 2018.11.13, 2019.12.31>
2. 공간시설 : 광장 · 공원 · 녹지 · 유원지 · 공공공지

ㄹ

유원지는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로 분류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8.5.26, 2009.11.2, 2013.6.11, 2016.2.11, 2018.11.13, 2019.12.31>
2. 공간시설 : 광장 · 공원 · 녹지 · 유원지 · 공공공지

ㅁ

공공공지는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로 분류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8.5.26, 2009.11.2, 2013.6.11, 2016.2.11, 2018.11.13, 2019.12.31>
2. 공간시설 : 광장 · 공원 · 녹지 · 유원지 · 공공공지

NoteBase

문 8. 「조경기준」상 옥상조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옥상에 교목이 식재된 경우에는 식재된 교목 수량의 1.5배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② 일반적으로 옥상조경 시 초화류의 경우 배수층 두께를 제외한 식재 토심은 15센티미터 이상이며 인공토양 사용 시 10센티미터 이상이다.

③ 옥상조경에는 방수 및 방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옥상조경 수목은 지지대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정답 4번

①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교목을 식재하면 **실제 식재한 교목 수량의 1.5배**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조경기준 제12조(옥상조경 면적의 산정)
옥상조경의 면적은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교목이 식재된 경우에는 식재된 교목 수량의 1.5배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②

초화류 및 지피식물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 두께를 제외하여 15센티미터 이상이며, 인공토양을 사용하면 10센티미터 이상**이다.

조경기준 제15조(식재토심)
①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두께로 하여야 한다.
1. 초화류 및 지피식물 : 1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10센티미터 이상)

③

옥상조경에는 **방수조치**를 하고,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경기준 제17조(방수 및 방근)
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방수조치를 하여야 하며,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NoteBase

④

옥상조경 수목에는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지대 설치는 의무이다.

조경기준 제18조(유지관리)
옥상조경지역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목은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9.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은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면 안 된다.

④ 출입제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하는 해당 지역주민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출입할 수 있다.

정답 1번

①

선지는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의 정의이다. 전이보전구역은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생태 · 경관보전지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 · 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 · 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 · 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 ·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생태 · 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3. 생태 · 경관전이(轉移)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험 원문의 환경부장관 명칭은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4조(생태 · 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제2장 생태 · 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 · 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 · 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NoteBase

③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는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과 토지의 형질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와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생태 · 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2장 생태 · 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①누구든지 생태 · 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 · 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26, 2023.3.21, 2023.8.8, 2024.2.6>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생태 · 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생태 · 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 · 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26, 2023.3.21, 2023.8.8, 2024.2.6>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 · 증축(생태 · 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2009.6.9, 2017.11.28, 2020.5.26,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④

일상적 농림수산업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해당 지역주민은 출입제한·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제한·금지 기간에도 출입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의2(생태 · 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 · 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해당 지역주민

NoteBase

문 10. 조경 계획·설계 시 행태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응답자가 특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질문에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는 조사방법은?

① 자유응답 설문조사

② 제한응답 설문조사

③ 시각적 응답조사

④ 순위 조사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응답자가 미리 정해진 답안이나 선택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말로 답하는 방식**이 자유응답 설문조사이다.

개념 구분

자유응답 설문조사는 질문에 대한 응답 내용을 미리 한정하지 않고, 응답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이 공원에서 개선할 점을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라고 묻고 의견을 직접 쓰게 한다. 발문의 **'특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는 이처럼 답할 내용을 응답자가 스스로 구성한다는 뜻이다.

제한응답 설문조사는 미리 제시한 선택지나 정해진 응답 범위 안에서 답하게 한다. 예를 들어 개선이 필요한 시설을 벤치·산책로·화장실 중에서 고르게 하는 방식이다. 두 방법을 가르는 기준은 질문의 주제가 아니라 **응답 내용을 미리 제한하는지**이다.

NoteBase

문 11. 「조경기준」상 조경면적 산정 및 배치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② 식재면적은 조경의무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③ 대지면적 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투수성 포장구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예외인 경우도 있다.

정답 3번

①

조경면적에는 **식재면적과 조경시설공간 면적이 함께 포함**된다. 따라서 나무 등을 심은 부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공간의 면적을 합산한다.

조경기준 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1. 식재면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하 "식재의무면적"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2.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식재면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의무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조경기준 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1. 식재면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하 "식재의무면적"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NoteBase

③

자연지반의 표면은 **토양이나 식재된 토양 또는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 투수성 포장구조도 인정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리다.

조경기준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① 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토양이나 식재된 토양 또는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의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자연지반에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2,000㎡ 이상의 대지는 **조경의무면적의 20%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 계획에 따르며, 허가권자가 가로변 연접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한다.

조경기준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③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허가권자가 가로변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oteBase

문 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공원시설의 종류 중 교양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① 수목원
② 자연체험장
③ 온실
④ 도시텃밭

정답 3번

①
수목원은 **휴양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jV4AvHhWp36JoWL2fB5Hg7R4KrBulHqO.webp

②
자연체험장은 **운동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나목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f_mdKy5UfRzhFbq9Rw9pZ1JibN7lgvuZ.webp

③
온실은 **교양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나목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A194d_KCqdxBxSyjaaSwpvGr9Xjwiiuu.webp

NoteBase

④

도시텃밭은 **도시농업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8Ty5ZZ7-XAn-Av8fnBXtMHZ8eX5sqA5Q.webp

NoteBase

문 13. 「조경진흥법」상 조경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②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③ 조경사업자의 창업·성장 지원
④ 조경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정답 1번

①

조경진흥시설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이며, 조경지원센터의 법정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경진흥법 제7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조경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경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건축물 등을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조경진흥법 제11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등)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2. 조경 관련 사업체의 발전을 위한 상담 등 지원
3. 조경 관련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4.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5. 조경분야의 육성 · 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
6. 조경사업자의 창업 · 성장 등 지원
7. 조경분야의 동향 분석, 통계작성, 정보유통, 서비스 제공
8. 조경기술의 개발 · 융합 · 활용 · 교육
9. 조경 관련 국제교류 ·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10.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NoteBase

②

조경지원센터는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사업을 수행한다.

조경진흥법 제11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등)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③

조경지원센터는 **조경사업자의 창업·성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조경진흥법 제11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등)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6. 조경사업자의 창업 · 성장 등 지원

④

조경지원센터는 **조경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조경진흥법 제11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등)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9. 조경 관련 국제교류 ·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NoteBase

문 14. 「2025 건설공사 표준품셈」상 주요 조경자재의 일반적인 할증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경용 수목 - 10
② 래디믹스트 콘크리트(무근 구조물) - 3
③ 벽돌(시멘트 벽돌) - 5
④ 목재(판재) - 10

정답 2번

①

2025년판 기준으로 조경용 수목의 일반적인 재료 할증률은 **10% 이내**이다.

2025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1-3-1 재료의 할증 8. 기타재료
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
1-3-1 재료의 할증('06, '11, '12, '19, '22, '23년 보완)
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값 이내로 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기타재료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an5Mn66ppE9R1C5sECHCo52FrZaMFZVh.webp

[주] ① 거푸집 및 동바리, 가건축물 또는 품셈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개별 부재의 설계조건에 의해 제작이 완료된 상태의 PC부재(PC암거, 건축용 구조부재 등)는 할증수량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PVC, PE관의 할증률(%)은 옥외공사 기준이며 옥내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10% 이내로 한다.
④ 현장 여건상 절단 및 가공 등이 불필요한 경우, 상기 할증률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NoteBase

②

2025년판 기준으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무근 구조물에 타설할 때의 일반적인 재료 할증률은 **2% 이내**이다. 3% 이내는 인력 및 믹서로 현장 혼합 콘크리트를 무근 구조물에 타설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2025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1-3-1 재료의 할증 8. 기타재료
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
1-3-1 재료의 할증('06, '11, '12, '19, '22, '23년 보완)
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값 이내로 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기타재료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an5Mn66ppE9R1C5sECHCo52FrZaMFZVh.webp

[주] ① 거푸집 및 동바리, 가건축물 또는 품셈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개별 부재의 설계조건에 의해 제작이 완료된 상태의 PC부재(PC암거, 건축용 구조부재 등)는 할증수량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PVC, PE관의 할증률(%)은 옥외공사 기준이며 옥내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10% 이내로 한다.
④ 현장 여건상 절단 및 가공 등이 불필요한 경우, 상기 할증률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NoteBase

③

2025년판 기준으로 시멘트 벽돌의 일반적인 재료 할증률은 **5% 이내**이다.

2025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1-3-1 재료의 할증 8. 기타재료
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
1-3-1 재료의 할증('06, '11, '12, '19, '22, '23년 보완)
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값 이내로 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기타재료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an5Mn66ppE9R1C5sECHCo52FrZaMFZVh.webp

[주] ① 거푸집 및 동바리, 가건축물 또는 품셈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개별 부재의 설계조건에 의해 제작이 완료된 상태의 PC부재(PC암거, 건축용 구조부재 등)는 할증수량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PVC, PE관의 할증률(%)은 옥외공사 기준이며 옥내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10% 이내로 한다.
④ 현장 여건상 절단 및 가공 등이 불필요한 경우, 상기 할증률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NoteBase

④

2025년판 기준으로 목재 중 판재의 일반적인 재료 할증률은 **10% 이내**이다.

2025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1-3-1 재료의 할증 8. 기타재료
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
1-3-1 재료의 할증('06, '11, '12, '19, '22, '23년 보완)
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값 이내로 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기타재료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an5Mn66ppE9R1C5sECHCo52FrZaMFZVh.webp

[주] ① 거푸집 및 동바리, 가건축물 또는 품셈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개별 부재의 설계조건에 의해 제작이 완료된 상태의 PC부재(PC암거, 건축용 구조부재 등)는 할증수량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PVC, PE관의 할증률(%)은 옥외공사 기준이며 옥내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10% 이내로 한다.
④ 현장 여건상 절단 및 가공 등이 불필요한 경우, 상기 할증률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NoteBase

문 15.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 가능한 한 자연공원이나 습지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중복하여 지정하도록 한다.

③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④ 지형의 경관미가 수려한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정답 2번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을 보호하고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을 훼손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2-1-1.
제2장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기준
제1절 지정의 일반원칙
2-1-1.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조제1호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NoteBase

②

자연공원·습지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자연보전 목적의 지역·구역과는 **가능한 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중복 지정하지 않도록 한다**. 선지는 중복 지정 원칙을 반대로 설명하였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2-2-2. (3)
제2장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기준
제2절 지정 기준
2-2-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할 때에는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생태·자연도, 임상도,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적성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3)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이나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등 자연보전 목적을 갖는 지역 또는 구역과 가능한 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중복 지정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은 도시녹지 체계 및 도시민의 여가·휴양 수요와 연계되도록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2-1-2.
제2장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기준
제1절 지정의 일반원칙
2-1-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도시녹지 체계 및 도시민의 여가 · 휴양 수요와 연계성을 갖도록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④

지형의 경관미가 수려한 지역은 경관의 자원적 가치를 고려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뛰어난 풍치·경관을 형성하거나 지역의 주요 조망대상이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2-2-3.
제2장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기준
제2절 지정 기준
2-2-3. 경관의 자원적 가치는 지형의 경관미가 수려하거나(지형 등이 뛰어난 풍치 또는 경관을 형성하고 있거나, 지역에서 주요한 조망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도시 또는 지역의 상징적 경관이 되는 지역, 지역의 역사성 등을 지닌 문화재 또는 유적, 유물이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경우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NoteBase

문 16.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도는?

<보기>
정부가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 및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

① 생태계서비스지불제
②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③ 경관보전직불제
④ 경관협정

정답 1번

공통 해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정부가 토지 소유자·점유자·관리인과 **생태계서비스의 보전·증진을 위한 활동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자연경관·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 변경, 화학물질 사용 감소, 습지 조성 등이 계약 내용에 해당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 · 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 · 경관보전지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3.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6.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생물다양성의 증진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다.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NoteBase

문 17. <보기>의 밑줄 친 'A'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A 은(는) 생태학에서 우수관리를 위해 미국에서 제안된 비점오염을 저감하는 기법이나 기술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도시와 같은 개발지역 물순환 체계 개선 관점에서 그린인프라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그리고 A 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①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② 최적관리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s)
③ 생태적 리질리언스(Ecological Resilience)
④ 택티컬 어바니즘(Tactical Urbanism)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최적관리기법(BMPs)은 빗물 유출에 따른 비점오염을 줄이는 시설·기술과 관리 방법을 뜻한다. 보기의 '우수관리'와 '비점오염 저감'이 이 용어를 가리키는 핵심 단서이다.

핵심 풀이

A의 의미: 최적관리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은 우수, 즉 빗물의 유출량이나 유출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시설·기술과 관리 방법이다. 비점오염은 도로·대지 등 넓은 지역의 오염물질이 빗물에 씻겨 하천 등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한다. 따라서 보기의 **'우수관리를 위한 비점오염 저감 기법'**은 최적관리기법에 해당한다.

그린인프라·저영향개발과의 연결: 저영향개발은 개발 이전의 자연적인 물순환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빗물을 발생 지점 가까이에서 관리하는 접근이다. 그린인프라의 토양·식생을 활용하는 시설은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식생수로는 빗물의 흐름을 늦추고 여과·침투를 유도하여 오염물질의 유출을 줄이는 BMP로 활용된다. 이처럼 **물순환을 개선하면서 비점오염을 줄인다는 기능** 때문에 세 개념이 밀접하게 연결된다.

자연기반해법과의 구분: 자연기반해법은 생태계를 보호·관리·복원하여 기후변화나 재해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과 생물다양성에 함께 이익을 주려는 접근이다. 우수관리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보기에서 묻는 **우수·비점오염 관리 기법을 지칭하는 용어**는 BMPs이다.

NoteBase

문 18. <보기>에서 설명하는 조류(鳥類)와 인간의 거리는?

<보기>
사람이 접근하면 수십 cm에서 수 m를 걸어 다니거나 가볍게 뛰기도 하면서 물러서서 사람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리

① 비간섭거리
② 회피거리
③ 경계거리
④ 도피거리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사람이 다가올 때 **걷거나 가볍게 뛰어 물러서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반응은 회피거리의 특징이다. 단순히 경계 자세를 취하는 행동이나 멀리 날아가는 도피 행동과 구별된다.

개념 구분

회피거리: 사람이 접근하면 조류가 수십 cm에서 수 m를 걷거나 가볍게 뛰어 물러나면서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려는 거리이다. 보기에서는 **접근에 맞추어 조금씩 자리를 옮기는 행동**이 이 개념을 가리킨다. 수십 cm에서 수 m라는 표현은 보기의 이동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모든 조류에 적용되는 고정된 사람과의 간격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경계거리: 먹이 먹기나 휴식 등 하던 행동을 멈추고 사람을 바라보거나 경계음을 내는 등 **경계 반응을 보이는 거리**이다. 보기처럼 물러나며 간격을 조절하는 행동과는 구별된다.

도피거리: 사람이 접근할 때 조류가 **단숨에 먼 거리를 날아 도피하기 시작하는 거리**이다. 보기의 짧은 보행이나 가벼운 뜀은 이러한 장거리 비행에 의한 도피와 다르다.

NoteBase

문 19. 생물다양성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하고자 하는 서식처를 대상으로 보호지구를 지정하고 그 주변에 일정 폭의 완충구역을 설치한다.

② 녹지의 수직적 및 수평적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③ 전체적으로 동질적인 경관을 형성한다.

④ 자생 야생동물종을 유인하기 위해 자생 식물종을 식재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경관을 전체적으로 동질화하면 다양한 생물이 이용할 서식환경이 줄어든다. 생물다양성 계획은 지역의 생태적 특성에 맞게 **서식처와 식생 구조의 다양성**을 유지·높이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보호지구는 보전할 서식처를 직접 보호하고, 주변의 **완충구역**은 외부의 개발이나 인간 활동에 따른 교란이 보호 대상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다. 보호할 핵심 공간과 외부 이용 공간 사이에 완충 공간을 두는 것은 서식처 보전에 적합하다.

② O: 수직적 다양성은 교목층·관목층·초본층처럼 높이에 따라 식생 구조가 다양해지는 것이고, 수평적 다양성은 공간적으로 서로 다른 식생과 서식처가 분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생물에게 **서로 다른 먹이·은신처·번식 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종이 서식할 수 있게 한다.

③ X: 전체적으로 동질적인 경관은 비슷한 환경만 반복되므로 서로 다른 서식 조건을 요구하는 종들을 수용하기 어렵다. 지역의 생태적 조건에 맞게 **다양한 서식처가 어우러진 이질적인 경관**을 유지·조성해야 한다. 이때 서식처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과 기존 서식처를 잘게 단절시키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④ O: 자생 야생동물은 지역의 자생 식물과 먹이 및 서식 관계를 맺고 있다. 자생 식물을 식재하면 열매·씨앗·꿀 등의 **먹이와 은신·번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 자생 야생동물의 유인과 정착에 도움이 된다.

NoteBase

문 20.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생태현황지도는 기본 주제도를 비롯하여 기본 주제도의 속성자료를 종합하여 유형화한 비오톱 유형도와 각 유형별 평가를 통한 등급을 도면으로 제시한 비오톱평가도로 제시한다.

②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전 도시계획, 공원녹지, 교통 등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작성 가능한 주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③ 비오톱 평가 등급체계상 'V등급'에 비오톱 평가 시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기초자료 획득이 불충분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비오톱이 해당된다.

④ 지자체는 토지이용상황의 변화, 비오톱지도의 운영상에서 발견되는 오류, 변경사항 등에 대해 수시로 갱신해야 한다.

정답 3번

①

도시생태현황지도는 **기본 주제도, 속성자료를 종합하여 유형화한 비오톱유형도, 유형별 평가등급을 도면화한 비오톱평가도**로 제시한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7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구성)
③ 도시생태현황지도는 기본 주제도를 비롯하여 기본 주제도의 속성자료를 종합하여 유형화한 비오톱유형도, 각 유형별 평가를 통한 등급을 도면으로 제시한 비오톱평가도로 제시한다.

②

지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작성 전에 도시계획·공원녹지·교통 등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로 작성 가능한 주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8조(작성 원칙 및 유의사항)
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지도 작성 전 도시계획, 공원녹지, 교통 등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작성 가능한 주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③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기초자료가 불충분하여 평가할 수 없는 비오톱은 V등급이 아니라 **'평가 외 등급'으로 제시하고 평가제외 사유를 명확히 명시**한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19조(비오톱 평가 원칙)
⑤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기초자료 획득이 불충분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비오톱은 '평가 외 등급'으로 제시하며 평가제외 사유를 명확하게 명시한다.

NoteBase

④

상시갱신의 주체는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이며, **토지이용상황의 변화와 지도 운영 중 발견되는 오류·변경사항을 수시로 갱신해야 한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24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갱신)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갱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한다.
1. 상시갱신
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상시갱신은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가 주체가 되며, 지자체는 토지이용상황의 변화, 비오톱지도의 운영상에서 발견되는 오류, 변경사항 등에 대해 수시로 갱신해야 한다.

NoteBase